

관리단체 운영규정

제정 2019.12.12.

개정 2023.12.15.

제1조(근거 및 목적) 이 규정은 대한골프협회 정관 제5조제4항 및 전국규모연맹체규정 제7조에 의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연맹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 <개정 2023.12.15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한골프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의 전국규모연맹체(이하 “연맹체”라 한다)에만 적용한다.

제3조(관리단체 지정의 통지) 협회는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연맹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지한다. <개정 2023.12.15.>

1. 관리단체 지정사유
2. 관리단체 지정일
3.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
4. 임원인준 취소
5. 그 밖의 주요사항

제4조(관리단체 지정의 효력)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연맹은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, 협회가 해당 연맹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해당 연맹체 임원 및 관계자(이하 “연맹체 관계자”라 한다)는 협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연맹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, 협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23.12.15.>

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연맹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맹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, 해당 관리단체는 통지를 송달받는 즉시 협회의 회원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한다. <개정 2023.12.15.>

제5조(연맹체 관계자의 의무 등)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연맹체의 관계자는 협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협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협회의 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15.>

② 연맹체 관계자는 협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·사무 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협회는 협회의 관리단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연맹체 관계자를 즉시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2.15.>

④ 연맹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연맹체가 정상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23.12.15.]

제6조(관리위원회의 설치) ① 협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연맹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12.15.>

③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한골프협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 <개정 2023.12.15.>

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대한골프협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23.12.15.>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연맹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23.12.15.>

1.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
2.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
3. 법제·상벌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12.15.>
4.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
5. 연맹체 정관(또는 규약)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 제반사항

② 위원회는 해당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의 총회 개최 및 임원 선임에 대한 기간 등의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2.15.>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 <개정 2023.12.15.>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3.12.15.>
 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.
 3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4.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(대회위원회, 심판위원회, 스포츠공정위원

회 등)를 들 수 있으며,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정관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개정 2023.12.15.>

부 칙 <2019.12.12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23.12.15.>

부 칙 <2023.12.15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